

『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조성하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(제1종 전문박물관)의 전문적·체계적·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목적, 정의,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9조)
-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~제12조)
-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~제20조)
- 대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1조~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조성하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개관이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임.
-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은 박정희대통령 및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·발전 자료의 전시와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4,359㎡(지하 1층, 지상 2층) 규모의 전시실, 수장고, 세미나실, 아카이브 등의 시설로 조성중이며, 전시콘텐츠 보완을 거쳐 10월중 개관할 예정임.

○ 검토 결과,

- 역사·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근현대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박정희대통령과 구미공단을 테마로 한 구미 근현대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,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및 구미 근현대사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관 이후 관람객의 건의사항 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역사자료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반영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